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32
----------	------------

제안연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안 제22조의 개정사항을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II. 주요내용

- 안 제22조의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함.(안 제 22조)

3. 참고사항 : 없음.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기타)”를 “(시행규칙)”으로 한다.</p>	<p>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기타)”를 “(시행세칙)”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시민 중심 언어의 자치법규 반영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0조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건의 부의)”를 “(안건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 부의”를 “협의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불가피”를 “불가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의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을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출받”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8조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기타)”를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부의할”을 “안건으로 부칠”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부의”를 “안건으로 제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